

고문변호사추천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7. 11. 24.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97.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유진생)

가. 제안이유

- 우리 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및 증원으로 위촉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변호사 정수의 2분의 1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 요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 : 4인(시장위촉 2인, 시의회 추천위촉 2인)
- 추천요구 : 시의회 추천 위촉변호사 2인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개정(증원)에 따른 신규위촉 1명
 - 시의회 추천 고문변호사(박성규 변호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위촉 1명
- 자격요건
 - 개업중인 변호사 중 시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
- 근거법령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고문변호사조례상에는 고문변호사가 4인으로 되어 있지만 부천시 여건상 2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98.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한 인건비 2명분은 삭감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네.
○ 4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인건비를 낭비할 필요 없이 2명만 위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 알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이현영 변호사 추천(1명만 추천)

6. 소수의견요지

- 지난 제43회 정기회의시(95년) 추천하여 금년 말에 임기 만료되는 박성규 변호사를 재추천하는 소수의견 있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추천변호사 현황

성 명	이 현 영(李 賢 永)	생 년 월 일	1956. 12. 12. (41세)
사 무 소	원미구 상동 442 신한빌딩 203호 (TEL : 438-3311)		
학 력	중앙대 법대		
주요경력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사법연수원 1990 변호사 개업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의안번호	제332호
의결년월일	97. 12. 27.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1. 24.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우리 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및 증원으로 위촉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부천시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변호사 정수의 2분의 1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 요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 : 4인(시장위촉 2인, 시의회 추천 위촉 2인)
- 추천요구 : 시의회 추천 위촉변호사 2인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개정(증원)에 따른 신규위촉 1명
- 시의회추천 고문변호사(박성규 변호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위촉 1명
- 자격요건
 - 개업중인 변호사 중 시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
- 근거법령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제1항

□ 첨부서류

- 부천시 개업변호사 현황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고문변호사현황

1. 일반현황

- 정 수 : 4명(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위촉권자 : 시장

2. 고문사항

-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고문변호사 보수

- 고문변호사 수당 : 월 200,000원 지급
- 소 송 착 수 금 : 소송을 위임할 때 지급
- 승 소 사 례 금 : 소송에서 60퍼센트 이상 승소했을 때 지급

4. 위촉고문변호사 현황

구분 \ 성명	이 건 방(행정소송담당)	박 성 규(민사소송담당)
생년월일	1937. 4. 28. (60세)	1958. 3. 9. (39세)
학 력	서울대 법대졸업	서울대 법대졸업
경 력	1963. 제1회 사법시험 합격 1967.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1988. 변호사 개업 1993. 부천시 고문변호사	1982.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6. 부천시청 외 5개 지검 검사 1995. 변호사 개업 1996. 부천시 고문변호사
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2 (서울고등법원 앞)	부천 원미구 상동 442 (인천지법 부천지원 앞)
위촉일자	1996. 6. 1. 제4회 재위촉	1996. 1. 1. 제1회 위촉
임기 만료일자	1998. 5. 31.	1997. 12. 31.

부천시 개업변호사 현황

구분 \ 주소지별	계	부천	서울	기타	비고
계	20	7	8	5	
판사출신	1	1			
검사출신	6	2	3	1	
군법무관출신	2	1		1	
기타 (변호사개업)	11	3	5	3	

부천시 개업변호사 주요경력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사무소위치 (전화번호)	학 력	주 요 경 력
1	강봉제 (姜鳳濟)	1917. 5. 10. (80세)	원미구 상동 448 다성2층 (324-3491)	서울대 법대	1946. 사법요원양성소시험 합격 1948. 서울지법 판사 1952. 변호사개업 1993. 서울제일변호사 회장 (법인부천종합)
2	강성련 (姜性鍊)	1959. 5. 20. (38세)	원미구 상동 442 신한빌딩 205호 (324-5000)	고려대 법대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사법연수원 1994. 변호사개업 (법인신세기종합)
3	권규대 (權圭大)	1963. 10. 23. (34세)	원미구 상동 448 다성2층 (324-3491)	중앙대 법대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사법연수원 1993 변호사개업 (법인부천종합)
4	길영기 (吉永基)	1921. 12. 9. (76세)	원미구 상동 446 산업은행빌딩 501호 (323-6611)	조선대 법학부	1952. 제1회 판검사 특별임용 1952. 서울지검 외 6개 지검 검사 1963. 변호사개업(법인부천제일) 1995. 부천제일법률사무소
5	김근재 (金根載)	1960. 6. 10. (37세)	원미구 상동 425-9 (325-0100)	한양대 법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90. 부천지청 외 2개 지검 검사 1994. 변호사개업(정인법무법인)
6	김중선 (金鍾善)	1961. 5. 5. (36세)	원미구 상동 446 산업은행빌딩 502호 (326-2121)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9. 부천경찰서 외 1개소 경찰간부로 근무 1991. 변호사개업 (법인부천제일)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사무소위치 (전화번호)	학 력	주 요 경 력
7	박성규 (朴性奎)	1958. 3. 9. (39세)	원미구 상동 442 신한빌딩 207호 (321-0011)	서울대 법대	1982.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4. 공군법무관 1986. 부천시청 외 5개 지검 검사 1994. 변호사개업 1996. 부천시 고문변호사
8	박두순 (朴斗洵)	1927. 1. 20. (70세)	원미구 상동 329- 12 형제빌딩 3층 (668-6644)	국민대 법학과	1954. 제6회 고등고시 합격 1954. 내무부, 서울시 간부로 근무 1962. 변호사개업
9	서성원 (徐盛源)	1966. 5. 21. (31세)	원미구 상동 446 산업은행빌딩 503호 (325-1900)	성균관대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사법연수원 1993. 변호사개업
10	오병국 (吳秉國)	1964. 10. 8. (33세)	원미구 상동 442 신한빌딩 205호 (324-5000)	한양대 법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91. 대구, 창원지검 검사 1994. 변호사개업 (법인신세기종합)
11	오성계 (吳成桂)	1949. 4. 28. (48세)	오정구 원종동 373 -10 대은빌딩 4층 (325-0017)	서울대 법대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변호사개업 1994. 부천시 전직 고문변호사 1995. 신한국당 오정지구당위원장
12	이사철 (李思哲)	1952. 9. 15. (45세)	원미구 상동 442 산업은행빌딩 205호 (324-5000)	서울대 법대	1974.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수원지검 외 5개 지검 검사 1991. 법무부 검찰 제2과장 1993. 서울 남부지청 특수부장 1995. 부천시 전직 고문변호사 1996. 제15대 국회의원
13	이양원 (李陽遠)	1959. 4. 17. (38세)	원미구 상동 448 다성빌딩 2층 (324-3491)	서울대 법대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 변호사개업 (법인부천종합)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사무소위치 (전화번호)	학 력	주 요 경 력
14	이중린 (李鍾麟)	1963. 1. 7. (34세)	원미구 상동 448 다성빌딩 301호 (325-0522)	연세대 법대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사법연수원 1993. 변호사개업 1997. 부천시 인사위원
15	이현영 (李賢永)	1956. 12. 12. (41세)	원미구 상동 442 신한빌딩 203호 (438-3311)	중앙대 법대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사법연수원 1990. 변호사개업
16	장백규 (張百圭)	1959. 9. 19. (38세)	원미구 상동 442 신한빌딩 507호 (325-0123)	서울대 법대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사법연수원 1995. 변호사개업
17	조용익 (趙勇翼)	1966. 12. 6. (31세)	원미구 상동 448 다성빌딩 203호 (325-0300)	성균관대 법대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사법연수원 1992. 군법무관 1995. 변호사개업
18	최 원 (崔 沅)	1967. 7. 17. (30세)	원미구 상동 453 송화빌딩 401호 (325-2167)	연세대 법대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사법연수원 1992. 군법무관 1995. 변호사개업
19	최명호 (崔明鎬)	1960. 10. 5. (37세)	원미구 상동 443-11 (325-3888)	연세대 법대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사법연수원 1987. 변호사개업
20	한성영 (韓聲英)	1957. 8. 24. (40세)	원미구 상동 442 신한빌딩 307호 (326-2211)	고려대 법대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사법연수원 1991. 부천시청 외 2개지청 검사 1995. 변호사개업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고문변호사 중 2분의 1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 답합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의회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별표1, 별표2 및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생략